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41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9년 2월 1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조례의 목적을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시민수요와 민관협력에 기반 한 스마트도시 추진 원칙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협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교통, 안전, 환경 등 각 부문별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되, 정책 총괄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5조).
-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상위 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3조 및 제1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재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술한 규정 및 실효성이 없는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18. 11. 8. ~ 11. 28.)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정책의 영역이 행정업무 중심에서 도시운영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변화된 정보통신 환경과 상위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기관별, 나라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며 약 100여개가 넘는 정의가 있으나 기술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주요기관의 스마트도시(시티) 정의

특성	내용
EU ⁹⁾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u>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u> 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도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일본 경제산업성 ¹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열과 미사용 에너지원의 이용 및 교통시스템 개선 등 <u>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차세대 기술과 선진 사회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활용</u> 되는 도시
중국 ¹¹⁾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u>차세대 정보 기술을 활용</u> 하여 스마트한 도시계획, 건설,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NIPA ¹²⁾	<u>ICT 기술을 통해 도시 거주자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향상</u> 되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CISCO ¹³⁾	<u>ICT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문제를 해결</u> 하고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 <u>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u> 시키는 신개념의 도시
IBM ¹⁴⁾	도시를 운용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시스템의 열쇠가 되는 정보를 <u>ICT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분석하며, 통합할 수 있는 도시</u>
Navigant ¹⁵⁾	지속가능성, 시민 복지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u>기술을 통합하는 도시</u>

○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종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2017. 8. 9. 개정 시행)에 따라 다른 시·도는 개정된 제명과 내용을 반영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안 부칙 제2조), 이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와 통합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조문 등을 반영한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는 부산, 인천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고양, 과천 등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음.

○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정보화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그 정책의지 및 입법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간소화한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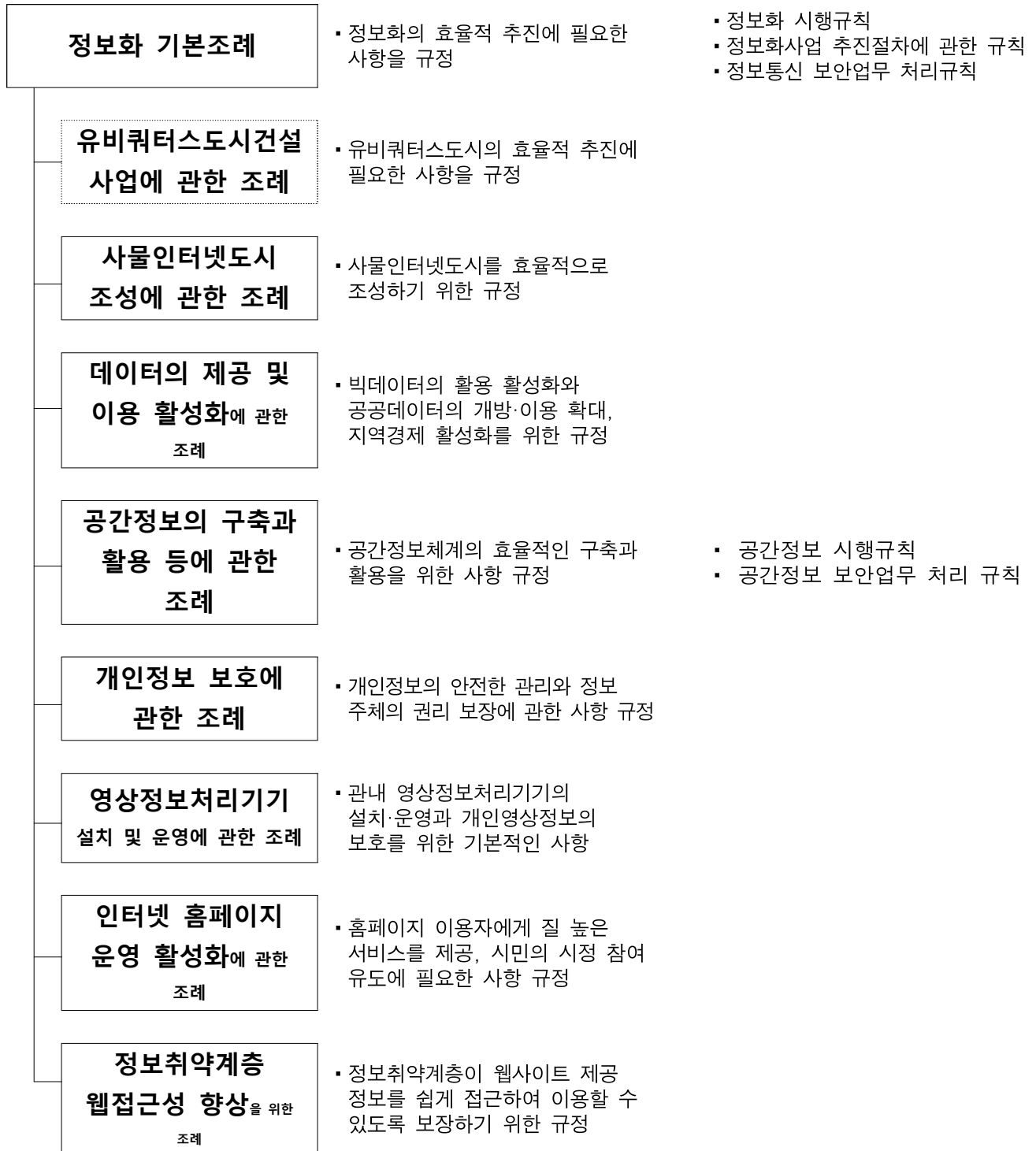
○ 다만, 동 전부개정안은 여러 상위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하나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 바, 법령 상호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령체계의 정합성 요청에도 부합하는지, 입법체계상 상위 법률에 따라 분리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조례의 정합성과 간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치중함에 따라 조례의 정의 및 목적규정과 내용 등이 누락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입법기술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어느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바, 전부 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아울러, 현행 서울시 정보화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하위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는 바, 하위 조례들과의 연계성과 부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정보화 관련 조례 체계도〉



※ 통계사무처리 규칙

나. 세부 내용 검토

1) 목 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례에 규정된 개별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지침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다만, 동 목적규정은 상위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양립에 따른 목적내용이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와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항들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동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동 조항은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은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 집행 및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조례의 구성 및 흐름 등 조례의 이해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3) 기본원칙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 안 제3조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원칙을 선언한 것인 바,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 등을 강조한 조례의 전부 개정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안 제1조와 연계하여 정보화 및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정안
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p>1. <u>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u></p> <p>2. <u>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u></p> <p>3. <u>정보격차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u></p> <p>4. <u>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 및 확산</u></p>	<p>1. <u>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u></p> <p>2. <u>최신 기술의 도입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 협력하여야 한다.</u></p> <p>3. <u>교통, 안전,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야 한다.</u></p>
---	--

- 안 제4조는 스마트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하여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인 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충돌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사업들이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 등에 의해 상호 연계·융합적인 관계속에서 추진되므로 현행 서울시 정보화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하위 조례들과의 연계성과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현행(「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음.
 - ※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는 동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제6조)

- 안 제5조는 시장이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의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조치로 보여짐.

- 현재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의 기본계획은 사업 수행의 일관성과 계획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기본계획내에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과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조례에는 기본계획만을 규정하고 있거나 시행계획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조례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규정 현황

조례명	기본계획(수립 주기)	실행계획(1년)	비고
정보화 기본조례	정보화 기본계획(5년)	정보화 시행계획	위원회 심의·확정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 기본계획(3년)		위원회 심의·확정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유비쿼터스도시계획(5년 목표)	-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사업계획/실시계획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위원회 심의·확정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위원회 심의·확정 (행안부에 제출 병행)
	-	빅데이터 시행계획	위원회 심의·확정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국토교통부에 제출

5)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제9조)

- 안 제7조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행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스마트도시위원회로 변경하여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위원회 설치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행정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심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행 정보화전략위원회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가운데 스마트도시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31명에서 25명으로 감원하고, 임기는 3년(현행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 수와 임기연장의 적정성 등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개선 방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정보화전략위원회 개최 및 참석현황

○ 2018년 : 4회

연번	개최일자	회의안건	참석인원(명)	참석률(%)
계	4회		57	
4	'18.12.21	· 신규위원 위촉식,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보고	17	70.8%
3	'18.7.18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자문	11	47.8%
2	'18.4.30	· 스마트시티 서울 전략 자문	12	46.2%
1	'18.3.30 ※전자회의	· 2017년도 정보화시행계획 심의 · 2017년도 웹접근성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	17	65.3%

○ 2017년 : 2회

연번	개최일자	회의안건	참석인원(명)	참석률(%)
계	2회		32	
2	'17.12.20 ※전자회의	·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신규과제 심의	18	69.2%
1	'17.3.29	· 2017년도 정보화시행계획 심의 · 2017년도 웹접근성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 · 서울 디지털 서밋 2017 추진방향 자문	14	54%

○ 2016년 : 2회

연번	개최일자	회의안건	참석인원(명)	참석률(%)
계	2회		30	
2	'16.12.21	· 신규위원 위촉식,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추진현황 심의	15	58%
1	'16.5.13	· 2016년 서울시 정보화시행계획 · 2016년 서울시 웹접근성 수준향상 시행계획 검토	15	52%

- 또한,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정책과 행정을 중요시하면서 스마트도시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를 과장(4급)에서 사무관(5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위원회의 위상 격하와 심의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적정성(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들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 제1항), 예산지원(안 제10조 제2항)과 민간협의체(안 제10조 제3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참여 확대와 스마트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으로 보임.

현 행	개정안
제2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제10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거나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p>

- 다만, 안 제10조 제1항에서 정책추진과정의 시민공유와 시민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상위 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서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강행규정에 따른 서울시의 과도한 의무부담 사항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없는지 여부와 임의규정으로의 수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0조제2항은 스마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출의 경우 사전에 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안 제10조제3항에서 시민참여와 민간협력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바, 민간협의체의 구성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 여부와 업무협약 등의 내실화 있는 추진을 위해 세밀하고 종합적인 방안마련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민간협의체 구성에 따른 업무협약의 가능성 여부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협약 체결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협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스마트도시 전시관 운영(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시장이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에 관한 계획·과정·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전시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것으로 스마트도시 서울의 우수 서비스와 기업 신기술을 한곳에 모아 스마트도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스마트도시 전시관은 시민·기업·행정이 참여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서울시 스마트도시 정책 모델 및 핵심 서비스를 위한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기업의 마케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트움 8·9층 (복층, 834㎡)
※ 8층(555㎡, 168평), 9층(279㎡, 85평), 동시 관람 가능인원 100여명
- 사업기간 : 2019. 3. ~ 12. (10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2,00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전시, 체험, 기업 지원을 위한 전시관 설계 및 시공
 - 스마트시티 전시관 상설 전시물(콘텐츠 포함) 기획 및 구현
 - 디스플레이 전시물, 체험장비, 전시 영상 S/W 및 H/W 제작·설치 등

- 다만, 스마트도시 전시관을 에스플렉스센터내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바, 에스플렉스센터 장기간 공실에 따른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간이 선정된 것은 아닌지 여부와 향후 시설비 예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 의결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스마트움 8층 및 9층(복층구조)은 스튜디오 방송시설로써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입주 공간으로, 2017년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에서 입주율 제고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요구받은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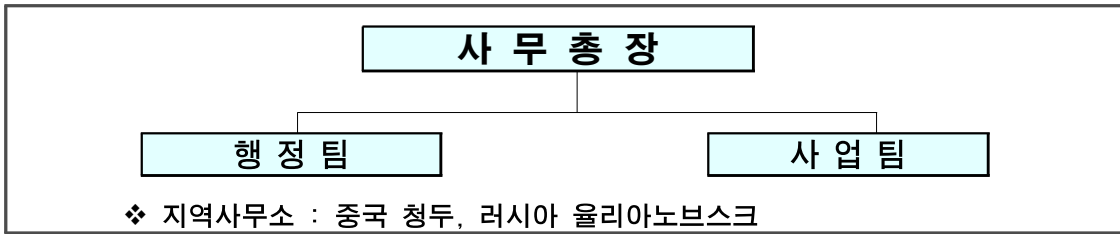
- 또한, 전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디지털재단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출연기관의 고유사무가 아닌 사무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민간위탁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예견되는 바, 예산 낭비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함께 중장기적인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8)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국 운영 필요경비와 서울시 소속공무원의 파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WeGO 사무국 일반현황 〉

○ 조 직



- 회 원 : 145개
- 인 력 : 총12명(사무총장1, 직원11)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38 서울글로벌센터 10층
- 2019년 예산 : 1,346,100천원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는 2010년도에 서울시가 창립을 주도하여 의장도시직을 수행하고 있는 바, 집행부는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의 명칭이 영문명칭과 불일치하고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바,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동 예방을 방지하고 문법에 적합한 용어 표현을 위한 기구 명칭의 통일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WeGO :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 WeGO(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 또한,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명칭을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이미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향후 의회의 권한을 경사하는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정책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의회의 지적에 따른 뒷북치기식 행정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 통합 검색에 따른 연계체계 개선과 홈페이지의 최신정보 수정보완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사무국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이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9)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운영(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상위법령(「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1))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임.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2019년 2월 기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적은 없는 상황임.

※ 법 적용대상 확대 : 건설사업 규모 축소(165만→30만 제곱미터)
건설사업 외 스마트도시서비스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 추가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상위법령(「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2))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으로써 그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만, 단일 조례에 심의 및 분과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이 존재하는 바, 다수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혼동의 가능성과 입법체계상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10) 상위 법령과의 중복 규정 정비 등(안 제2조~제42조 등)

-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재정비하고 상위 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술한 규정과 사문화되어 실효성이 적은 규정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삭제 조문	중복 등 관련 내용
제2조(정의) 제1,3~10, 12, 14호 제2호 “공간정보” 제11호 “전자심의”, 제13호 “디지털행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및 제32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별도 정의 불필요
제5조의2(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제15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제18조(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정부법 제1절 전자적인 민원처리
제19조(디지털행정의 추진)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14년, 폐지) ※ 디지털행정이 시 행정 전반에 보편화되어 있으며, “촉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등 조례의 규정 전반이 ‘사문화(死文化)’
제20조(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공간정보의 구축·활용)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유비쿼터스도시의 추진)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제24조(표준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제28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조례 제28조2에 구체화된 조문이 있어 불필요
제30조(정보화교육)	조례 제34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시책 추진으로 별도 조항 불필요
제32조(정보문화의 창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제33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제38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제39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제40조(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1조(정보화자료 수수료) 및 〈별표 2〉 수수료 징수기준	전자정부법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조례 〈별표 2〉 불필요
제42조(수수료 감면대상)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수수료의 감면)

다. 종합 의견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전부개정의 적정성 및 조례의 분리여부, 스마트전략위원회 위원의 수의 조정(현행 31명→25명), 임기(현행 2년→3년), 위원장 선임규정(현행 시장→민간위원)의 적정성, 시민참여와 업무협약 체결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의회의 의결 필요성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전이행 여부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을 구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그 밖에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p> <p>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p> <p>6.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p> <p>7.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p> <p>8.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p> <p>9. "정보통신제품"이란 정보통신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p> <p>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p> <p>11.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p>	

현행	개정안
<p>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p> <p>12.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p> <p>13. "디지털행정"이란 서면 및 구두로 처리하던 행정업무를 컴퓨터 및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정보자원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업무개선과정을 말한다.</p> <p>14.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4.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 및 확산 	<p>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최신 기술의 도입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야 한다. 3. 교통, 안전,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서울특별시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p>
<p>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u>자치구의 정보화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p> <p>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u> 2. <u>정보화 목표와 전략 및 추진 체계</u> 3. <u>각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4. <u>건전한 정보문화 조성·확산</u> 5. <u>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u> 6. <u>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u> 7. <u>행정정보의 공동 활용</u> 8. <u>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u> 	<p>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u>서울특별시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p> <p>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각 분야별 정책 4. 시민,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5. 정보보안, 이용자 권익 보호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등 역기능 방지

현행	개정안
<p>과 이용활성화</p> <p>9.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 문화 조성</p> <p>10. 정보통신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p> <p>11. 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p> <p>12. <u>재원의 조달 및 운용</u></p> <p>13. <u>자치구와의 협력 및 조정</u>에 관한 사항</p> <p>14. 그 밖의 <u>정보화를 위하여</u> 필요한 사항</p> <p>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p>	<p>7.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p> <p>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p> <p>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5조의2(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p>	
<p>제6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p>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p>

현행	개정안
<p>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p>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p>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5.18></p> <p>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1명 이내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기획담당관이 된다.</p> <p>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p> <p>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3.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촉직 위원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현행	개정안
	<p>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p> <p>⑥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제8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p> <p>1. <u>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u></p> <p>2.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u></p> <p>3. <u>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u></p> <p>4. <u>그 밖의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회는 심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p>	

현행	개정안
<p>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p>	
<p>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삭제 <2017.5.18> 2. 삭제 <2017.5.18> 3. 삭제 <2017.5.18></p> <p>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p> <p>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개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p>	<p>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③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p> <p>④ 이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p>
<p>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①항 이동안 제1, 3, 4항 신설</p> <p>제2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0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거나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p>
<p>제14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p> <p>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획관이 된다.</p> <p>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p> <p>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p>	<p>제11조(스마트도시책임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조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2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책임관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된다.</p>

현행	개정안
2.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5.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6.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 7. 정보화의 표준화 추진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시장은 정보화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자치구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호 의견을 조정·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3장 정책의 추진
제1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	제12조(부문별 스마트도시 추진) ① 시장은 교통, 안전, 환경 등 부문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장은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p>야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시장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18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p>	
<p>제19조(디지털행정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삭제(2014.1.9)</p>	
<p>제20조(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p> <p>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제21조(공간정보의 구축·활용) ① 시장</p>	

현행	개정안
<p>은 시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제22조(유비쿼터스도시의 추진) ① 시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u>유비쿼터스도시기술</u>을 활용한 <u>유비쿼터스도시건설</u>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u>유비쿼터스도시</u>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u>유비쿼터스도시사업</u>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제23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시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를 위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정보화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당해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9조(통합센터 운영)의 내용 반영(신설) 「스마트도시법」 제19조(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조례 위임 조문</p>	<p>제1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① 시장은 정보자원, 정보통신 등에 대한 공동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3호에 따른</p>

현행	개정안
	<p>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4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제26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제15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6조(스마트도시 전시관 운영) 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계획·과정·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전시관(이하 “전</p>

현행	개정안
	<p>시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8조의2 이동 및 개정</p> <p>제28조의2(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지원) <u>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체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u>협의체 사무국 파견</u> <p>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협의체 사무국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협의체 사무총장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세계도시 간 공동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u></p> <p>③ <u>협의체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사업 연도의 협의체 사업계획서를 해당 사업 연도 개시 5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가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u>협의체 사무</u></p>	<p>제17조(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 ① 시장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eGO), 이하 “기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기구 사무국 파견 <p>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 사무국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기구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이 협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p> <p>③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 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가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사업 정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를</p>

현행	개정안
<p>총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 회의는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협의회의 위원은 스마트도시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제24조(표준화)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p>	
<p>제25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p>	

현행	개정안
<p>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p>	
<p>제26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제2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8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① 시장은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 2. 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지원 3. <u>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u> 4. <u>국제기구 신설이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p>제28조의2(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지원)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u>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u></p>	

현행	개정안
<p>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체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협의체 사무국 파견 <p>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 사무국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협의체 사무총장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세계도시 간 공동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p> <p>③ 협의체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사업 연도의 협의체 사업계획서를 해당 사업 연도 개시 5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가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9조(통합센터 운영)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보통합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5.18></p>	
<p>제30조(정보화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31조(수탁업무 처리) ①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화자료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p>	
<p>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p>	
<p>제32조(정보문화의 창달)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p>	

현행	개정안
<p>보문화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문화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2.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홍보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33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34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8.1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p>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p> <p>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20조(정보격차 해소)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36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1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위해 보안컨설팅, 교육, 정보보안 진단 및 관리실태 점검을 해야하며, 정보보안</p>

현행	개정안
	<p>감사 및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정보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p> <p>④ 시장은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에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해야 한다.</p> <p>⑤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37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2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38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9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p>	

현행	개정안
<p>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2.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5장 정보화자료 관리	제4장 보칙
제25조(저작권 등록) 이동 >	제23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업무 처리)	<p>제24조(수탁업무 처리) ①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보시스템 관리, 데이터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른다.</p>
<p>제40조(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를 제공받은 공공기관 등은 당해 업무와 직접 관</p>	

현행	개정안
<p>련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1조(정보화자료 수수료) ①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수수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2조(수수료 감면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수수료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에</p>

현행	개정안
	<p>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와 그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p> <p>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p>

[별표]

정보시스템 등의 수탁수수료 징수기준(제24조 관련)

관리 유형	부과 대상	소요경비 산출 방법	기 준
장소 임대	장소 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실 임대료 · 건물대부료산출기준액 × (전용면적/시스템실면적) × 대부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적용 · 대부요율 (제26조) · 건물대부료산출기준액(제29조) ○ 전용면적 : 2.88㎡ (19" 랙기준)
	전기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전기 사용료 (월) · (사용량 × 사용시간 × 단가) + 기본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 : 계측값 ○ 단가 :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적용(일반용 전력(을) 고압A 선택Ⅱ 요금제 적용)
	전기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온향습기 전기사용료(월) · 사용량 × 사용시간 ×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 : (해당서버사용량/전체서버사용량) × 시스템실 향온향습기 전체사용량 ○ 단가 :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적용(일반용 전력(을) 고압A 선택Ⅱ 요금제 적용)
자원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금액 × 요율 × 1.1 × 자원 사용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율 : 해당연도 예산편성 H/W, S/W 유지보수 요율 적용 ○ 1.1 : 부가가치세 ○ 자원사용율 : 해당 자원 사용량/전체 자원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료	회선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회선 · 인터넷사용료 총금액 × (사용대역폭/총대역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위탁기관 부담
	통신장비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장비 · 도입금액 × 요율 × 1.1 × (사용 port 수 / 전체 port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율 : 해당연도 예산편성 H/W, S/W 유지보수 요율 적용

별표2 삭제

[별표 2]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 (제41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인 건 비	일반직 공무원 6급20호 봉급 ÷ 30 × 작업일수
2. 소 모 품 비	실 비
3. 제 잡 비	위 전체금액의 40%
<p>주) 봉급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본급여를 말한다.</p>	